○○초 학생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수원지방법원
사건번호	2019가소○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구상금
원 고	○○○○○○공단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20. 6. 9. 원고승	비 고	
사건개요	❍ 소외 □□□(이하 '피해자'라 함)은 2017. 7. 6. 14:30경 학교 강당에서 방과후학교 배드민턴부 활동을 하다 같은 부원이 연습 중 휘두르던 배드민턴 라켓에 안명부를 맞고, '안와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' 등의 부상을 입어 ◇◇병원 등에서 2017. 7. 6.자부터 치료를 받았으며, 총 1,467,900원 중 피해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876,65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음. ❍ 원고는,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, 피해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 취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부담금 금876,650원을 구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피고는 원고에게 876,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1. 9.부터 2019. 9. 3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		
판결이유	❍ 피해학생의 연령,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, 이 사건 사고는 배드민턴 수업에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두 교육만으로 지도교사가 보호·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, 사고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%로 제한함. ❍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중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취득함. - 총 손해액: 1,487,900(공단부담금 876,650원+본임부담금 611,250원) - 과실상계 적용: 872,740원(=1,487,900*60%) - 대위가능금액: 876,650		